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0월 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1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10월 18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해양)

□ 제안이유

- 2004. 7.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가 시·군·구로 이관됨에 따라
- 구청장에게 위임된 건축허가등에 관한 업무와 동일하게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정보통신과 구 위임사무 신설 (안 별표)
 -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,000m²이하의 건축물 및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2호
의결 년월일	2004. 10. 22 (제115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10. 5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2004. 7.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업무가 시·군·구로 이관됨에 따라
- 구청장에게 위임된 건축허가등에 관한 업무와 동일하게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정보통신과 구 위임사무 신설 (안 별표)
 - 6층이하로서 연면적 2,000㎡이하의 건축물 및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의 주민자치과란 다음에 정보통신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기관
정 보 통신과	1. 6층이하로서 연면적2,000㎡ 이하 건축물 및 100세대이 하의 공동주 택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	가. 검사신청서(설계도서등) 확인 나. 현장방문 사용전 검사 실시 다. 검사필증 교부결정 라. 재검사 및 보완통보 마.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 바. 검사장비 및 대장 기록 관리 사. 사용전 검사 결과보고 아. 업무계획 수립 자. 사용전검사 수수료 징수 차. 기타 사용전검사 관련 사항	· 정보통신공사 업법 제36조	구청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1.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

현					행					개					정					안				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	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임 기관															
〈신 설〉					정 보 통신과	1. 6층이하로서 연면적2,000㎡ 이하의 건축물 및 100세대이하의 공 동주택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	가. 검사신청서(설계도서등)확인 나. 현장방문 사용전 검사 실시 다. 검사필증 교부결정 라. 재검사 및 보완통보 마.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바. 검사장비 및 대장 기록관리 사. 사용전검사 결과보고 아. 업무계획 수립 자. 사용전검사 수수료징수 차. 기타 사용전검사 관련사항	·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	구청장															